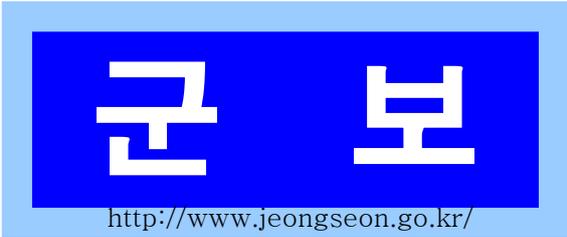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0호 2010. 1. 20. (수)

【훈 령】

- 정선군훈령 제383호 정선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1
- 정선군훈령 제384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규정..... 2
- 정선군훈령 제385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4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80호 지방하천 어천 하천공사 준공고시..... 10
- 정선군고시 제2010-4호 하천구역 · 예정지구역 지형도면 고시..... 12
- 정선군고시 제2010-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13
- 정선군고시 제2010-9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안)..... 15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841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7
- 정선군공고 제2010- 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5
- 정선군공고 제2010- 3호 정선군 건축조례 및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9
- 정선군공고 제2010- 8호 취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34
- 정선군공고 제2010-18호 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35
- 정선군공고 제2010-1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36
- 정선군공고 제2010-20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38
- 정선군공고 제2010-22호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39
- 정선군공고 제2010-23호 「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47
- 정선군공고 제2010-32호 예방접종공고..... 49
- 정선군공고 제2010-33호 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공고.....50
- 정선군공고 제2010-34호 765kV 신태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5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12. 28.

정 선 군 수 유 창 식

정선군훈령 제383호

정선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를 “선택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된다” 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인 단체보험의 가입조건에 있어, 정부의 ‘실손형 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침에 의거 의료실비 보장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입원의료비 보장보험’자율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실정에 불필요한 일부내용 삭제

주요내용

- 기본항목중 ‘입원의료비 보장보험’자율가입 조항 삭제(제8조제1항)
- ‘개인별 선택’ 조항 삭제(제11조)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12. 28.

정 선 군 수 유 창 식

정선군훈령 제384호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선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및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 및 여성보호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아동 및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지역연대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연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관련시설
2.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관련기관
3. 병원, 보건소, 119 등 의료기관
4.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기관
6. 그밖에 아동·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및 단체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지역연대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지역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 1. 4.

정 선 군 수 유 창 식

정선군훈령 제385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본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감사법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서비스연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경로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가족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복지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단체교류담당	지방행정주사	
	교육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정보통신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통신주사·지방전산주사	
녹색정책과	기후변화대응담당	지방행정주사	
	디자인정책담당	지방행정주사	
	미래전략담당	지방행정주사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부과담당	지방세무주사	
	과표담당	지방세무주사	
	징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계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민원봉사과	민원처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적관리담당	지방시설주사	
	토지운영담당	지방시설주사	
	공간정보담당	지방시설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환경산림과	환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생활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정화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 지방보건주사
		산림조성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경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농촌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농업마케팅담당	지방농업주사
		친환경농업담당	지방농업주사
		축산지원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관광문화과	관광진흥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마케팅담당	지방행정주사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주사
		생활체육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유통소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기업유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본 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건설관리담당 주택담당 도로관리담당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재해예방담당 하천관리담당 방위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사회지도담당 작물지도담당 특화작목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
	보 건 소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위생담당 건강관리담당 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기주사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기주사 지방보건주사 · 지방간호주사 · 지방의기주사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수도시설담당 하수시설담당 시설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 지방환경주사 · 지방공업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읍 면》	정 선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고 한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사 북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 동 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사회복지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화 암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남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기관별	실·과·소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읍 면》	여 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북 평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임 계 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업주사 · 지방시설주사	
《출장소》	함백출장소	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정선군고시 제2009-180호

지방하천 어천 하천공사 준공고시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9.

정 선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어천지구(어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해가 우려되는 수해상습지역에 대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홍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농경지 보호
 - 공사개요 : 전석쌓기 L=674m, 조정석쌓기 L=109m, 생태복원지오네트 L=642m, 배수로 L=316m, 돌계단 2개소, 수목식재 10주, 수크렁및물억새식재 4,150본, 콘크리트포장 L=67m, 배수문 4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화암동굴상류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정선군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09. 03. 17 ~ 2009. 12. 18
6. 하천구역에 편입된 용지조서 : “별첨”
7. 하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축척 1/ 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033-560-24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게재 생략)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관리청 : 정선군수
 ○ 하자보수 책임기관 : 정선군수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주 소	성 명	
1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39	제	501		강원도	
2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38-1	제	47		강원도	
3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75-6	제	649		강원도	
4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75-7	제	397		강원도	
5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75-5	제	702		강원도	
6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77-1	제	573		강원도	
7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01-1	제	763		강원도	
8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02-5	제	1,084		강원도	
9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02-4	제	1,579		강원도	
10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02-1	제	2,037		강원도	
총 계	10필지					8,332			

정선군고시 제2010-4호

하천구역 · 예정지구역 지형도면 고시

1. 하천법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하천, 예정지구역에 대하여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01. 8.

정 선 군 수

- 가. 고시이유 : 기존의 개별법에 의거 용도지역 · 지구 등으로 결정 또는 지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함
-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임계면 일원
- 다. 지형도면 고시내역

하천등급	하천명	읍면	시 점	종 점	연장(km)	면적(m ²)	비고
합 계					20.30	1,596,480	
지방하천	임계천	임계면	직원리 694	임계리 48-23	11.50	1,260,386	
지방하천	봉산천	여량면	구절리 437	유천리 723-4	8.80	336,094	

- 라. 편입토지 세부조서 : 게재생략(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비치)
- 마. 하천구역 고시도면 : 게재생략(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비치)

정선군고시 제2010-8호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1. 15.

정 선 군 수

지적측량기준점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지적삼각보조점 보39~보69 정선소도1291~ 정선소도1486	“별	지	첨	부“	
기 준 점 원 명	동 부 원 점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일원				
측 량 연 월 일	2009. 7. 19.				
측량성과보관장소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비 고	신설설치				

지적측량기준점

기준점구분	기준점명	평면직각중회선 수치		표지구분	기준점 소재지
		X(m)	Y(m)		
삼각보조점	보39	413087.01	184061.91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41
삼각보조점	보40	411687.29	183603.24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58
삼각보조점	보41	411759.95	183257.40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60-3
삼각보조점	보42	410977.91	182929.13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60-80
삼각보조점	보43	413362.74	183521.03	표석	사북읍 사북리 394-8
삼각보조점	보44	412346.36	183602.18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58
삼각보조점	보45	411896.70	183641.03	표석	사북읍 사북리 421-2
삼각보조점	보46	411779.91	184289.60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65
삼각보조점	보47	411890.33	184727.28	표석	고한읍 고한리 384
삼각보조점	보48	411908.12	185532.11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41
삼각보조점	보49	411465.94	184758.57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50	411470.95	185476.10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51	411835.92	185864.67	표석	고한읍 고한리 127-47
삼각보조점	보52	411202.81	185744.49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53	411386.44	186396.16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6
삼각보조점	보54	411199.57	186620.23	표석	고한읍 고한리 99-45
삼각보조점	보55	411517.82	186982.92	표석	고한읍 고한리 80-27
삼각보조점	보56	410657.16	185040.92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57	410238.23	183884.41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3
삼각보조점	보58	409802.08	183806.63	표석	사북읍 사북리 산155-3
삼각보조점	보59	408947.52	183718.51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60	409053.71	184346.82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61	409855.75	184602.61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62	409279.36	185119.54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63	408562.45	184541.83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각보조점	보64	408726.30	186074.75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66
삼각보조점	보65	409170.25	186996.12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08
삼각보조점	보66	407847.55	185804.99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66
삼각보조점	보67	408106.77	185973.23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39
삼각보조점	보68	407485.78	186448.28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67
삼각보조점	보69	407853.41	186613.07	표석	고한읍 고한리 산1-167
도근점	1291	411649.06	183554.38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3
도근점	1292	411596.88	183539.35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62
도근점	1293	411527.10	183506.50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3
도근점	1294	411549.86	183471.90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73
도근점	1295	411527.44	183423.21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73
도근점	1296	411495.79	183358.21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74
도근점	1297	411437.05	183152.28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60-73
도근점	1298	411592.80	183393.05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3
도근점	1299	411634.08	183356.03	표철	사북읍 사북리 산155-77

정선군고시 제2010-9호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고시(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가. 봄 철 : 2010. 2. 1 ~ 5. 15(104일간)

나. 가을철 : 2010. 11. 1 ~ 12. 15(45일간)

※ 산불조심 기간 중 전 산림에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을 금지합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지정현황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관내 민유림(ha)	입산통제구역(ha)
	38,198	12,768

나. 등산로 개방·폐쇄구역 지정현황

구분	합계		개방		폐쇄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
	30	113.4	10	44.2	20	69.2

3. 기타사항

가. 산불조심 기간 내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므로 입산신고를 하지 않고 입산 할 수 있습니다.

2010. 1. 18.

정 선 군 수

-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2)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고시 내역 1부.

등산로 개방·폐쇄 지정·고시 내역

소재지			등산로			개폐여부
읍면	리	산 명 (등산로명)	노선번호	구 간	총거리 (km)	
정선읍	북실리	조양산	01	성불사입구-정상-신월리	5.8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1	주노선-진성주유소	1.2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2	진성주유소-주노선	1.4	개방
정선읍	애산리	조양산	01-03	진성주유소-주노선	1.1	개방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01	아리랑아파트뒤-정상-굴암리입구	5.3	폐쇄
정선읍	봉양리	비봉산	01	정선경찰서후문-정상	2.2	개방
고한읍	고한리	함백산	01	만항재-정상-적조암입구	10.1	개방
고한읍	고한리	못골	01	못골아파트-은대봉	3.0	폐쇄
사북읍	직전리	노목산	01	폐기물중간처리장-정상	2.9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1-01	강원랜드세탁공장-주노선	2.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2	노른가리-정상	3.6	폐쇄
사북읍	사북리	노목산	03	노나무재-정상	2.3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1	노나무골-주노선	2.1	폐쇄
화암면	백전리	노목산	03-02	서원기-주노선	4.3	폐쇄
신동읍	덕천리	백운산	01	점재마을-정상-제장마을	6.7	개방
화암면	화암리	물운대	01	화암약수-정상-물운리	5.4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	화암동굴입구-정상-별문재	6.2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1	문재-주노선	1.1	폐쇄
화암면	화암리	각희산	01-02	화표동입구-주노선	2.6	폐쇄
화암면	물운리	지역산	01	아랫제동입구-정상	3.5	폐쇄
화암면	물운리	지역산	01-01	주노선-정상	4.9	폐쇄
남면	유평리	민동산	01	증산초교-정상-불암사	10.1	개방
남면	유평리	민동산	01-01	주노선-고병골	2.3	개방
남면	무릉리	민동산	01-02	능전-정상	3.3	개방
남면	문곡리	벽암산	01	용궁낙시터-정상	1.5	폐쇄
남면	낙동리	백이산	01	개미마을-정상	2.8	폐쇄
남면	광덕리	백이산	02	역발-정상	3.6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	문곡다리주차장-정상-고양리노인정	6.7	폐쇄
북평면	문곡리	상정바위	01-01	주노선-놀탐-주노선	1.5	폐쇄
임계면	봉산리	장찬성	01	봉산1리-정상-송계솔밭	3.3	폐쇄

정선군공고 제2009-841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 12. 31.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 양안 100미터이내 지역에서 음식업과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및 숙박시설 규제완화(안 별표24)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당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으로 규제하던 사항을 국가하천으로 제한하고, 골지천을 비롯한 9개의 지방하천은 휴게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완화.
 - (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

나.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허용토록 규제완화

다. 기존공장 및 유원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안 제50조, 제50조의2)

- 자연녹지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는 최초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40% 범위안에서 완화.
-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건폐율(40%■50%) 완화.
- 자연녹지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20%에서 30%이하로, 공원내 건폐율은 유형에 따라 20% 적용하던 사항을 일괄 20% 이하로 확대.

라.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55조의2)

-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

마. 군계획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제59조)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역량 제고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개의 시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개정

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규제완화**(별표 2 ~ 별표 19)**

- 공익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규제사항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건설도시과(전화 560-2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4. 공작물(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이내”를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를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제2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영 별표 20 제2호 및 영 별표 27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48조제5호 중 “라목” 을 “다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방화지구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1조 중 “ 「농지법」 제34조” 를 “ 「농지법」 제32조제1항” 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영 제9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업종보다 오염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란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9조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로 한다.

제63조의2 중 “1년으로” 를 “6개월로” 로 한다.

별표 1 제7호 및 별표 2 제4호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를 각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 3 제5호, 별표 4 제4호 및 별표 5 제4호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를 각각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3 제10호, 별표 15 제8호 및 별표 18 제9호 가목 중 “제2조제8호” 를 각각 “제2조제9호” 로 하고, 나목 중 “제2조제9호” 를 각각 “제2조제11호” 로 하며,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3 제10호 바목 중 “제8조” 를 “제7조” 로 한다.

별표 3 제12호, 별표 4 제11호 및 별표 5 제11호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을 각각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로 한다.

별표 3 제15호, 별표 4 제14호, 별표 5 제14호,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12호, 별표 10 제13호, 별표 11 제9호,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13호 및 별표 20 제10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 을 각각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로 한다.

별표 4 제5호 및 별표 5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6 제5호, 별표 10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6 제16호, 별표 7 제13호, 별표 10 제16호, 별표12 제13호, 별표14 제12호, 별표15 제15호, 별표17 제13호, 별표 18 제16호, 별표 20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6 제9호, 별표 9 제9호 및 별표 10 제11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를 각각 “저공해자동차” 로 한다.

별표 7 제10호, 별표 8 제8호 중 “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연료공급시설” 을 각각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로 한다.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1호 중 “교정 및 군사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을 각각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4호 중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를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로, 같은 별표 제6호 중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를 “의료시설” 로 하며, 같은 별표 제7호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를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로 한다.

별표 8 제2호 중 “영 별표 9 제1호가목” 을 “제1호 가목” 으로 하고, 별표 9 제1호 중 “영 별표 10 제1호나목” 을 “제1호 나목” 으로 한다.

별표 13 제6호 중 “영 별표 14 제1호라목” 을 “제1호 라목” 으로 한다.

별표 14 제7호 및 별표 17 제5호 중 “제8호” 를 “제10호” 로 하고, “중학교·고등학교” 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 15 제4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 을 “판매시설” 로 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9호 중 “제18호의 참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참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로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6 제5호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 중 “제18호의 참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참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로 한다.

별표 17 제7호 중 “제18호의 참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를 “제18호 가목의 참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로 한다.

별표 18 제6호 중 “고등학교” 를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로 한다.

별표 19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1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에 것으로서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한한다)” 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로 하고, 같은 별표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4 제목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수 있는 지역)” 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에 의한 국가하천·지방하천(골지천, 임계천, 송현천, 송천, 봉산천, 오대천, 어천, 용탄천, 지장천, 석항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선군공고 제2010-2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보,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사전통지),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장기간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1. 06.

정 선 군 수

1.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0. 01. 07 ~ 2010. 01. 22(15일간)
 4. 공고내용 : 상기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납부의무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 및 의견제출등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 및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가산금등에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 이의신청 제출처 : Fax) 033-560-2174,
 ☆ 우편: 233-87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적발통지, 고지서,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차량번호	위반일자	반송사유	성명	위반장소	반송된 주소
강원27머 6489	2009-12 -09	이사감	이창근	아우디전당사앞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115번지 2/4
67거7180	2009-12 -02	수취인 불명	김순태	오뚝이전당사앞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90번 지 16/
65러1398	2009-12 -11	이사감	강석우	스키보드(고한)	경상남도 창원시 서상동 208번지 4호 39/3
강원27나 5824	2009-05 -02	장기간 방치	노영순	사복읍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43번지 4호 14/5
02부8270	2008-11 -10	수취인 불명	윤진수	사복신협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33번지 1호
02부8270	2008-12 -01	수취인 불명	윤진수	미가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33번지 1호
02부8270	2008-12 -02	수취인 불명	윤진수	미가앞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33번지 1호
서울51도8 960	2009-04 -19	이사감	정해생	사복읍사무소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376번지 3호 3통 1반
경기57너 8572	2009-08 -10	수취인 불명	이보숙	사복읍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46번지 6 호 2/5 서울주택 B동 303호
47오3751	2009-08 -12	이사감	주식회사 지앤씨	우리들의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40번지 44호 2층
34부9062	2009-08 -12	주소불명	이순님, 윤석봉	사복신협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59번지 10호 5/2
31다3295	2009-08 -12	수취인 불명	임종대	사복신협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40번지 18 호 7/2
55서5795	2009-08 -12	이사감	권태산 (장애4급)	최약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417번지 62호 2/3 청구홈타운 102동 102호
19오5217	2009-08 -13	수취인 불명	C.H산업 (주)	사복신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50번지 18호
09로5692	2009-08 -09	이사감	강순영 (상품용)	사복신협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51번지 5호
19버5008	2009-08 -08	이사감	황호성	사복우체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07번지 62 호 3/4 벨르메종2 302호
93거6357	2009-08 -08	수취인 미거주	권무진	사복신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747번지 2/2
18도2081	2009-08 -07	수취인 불명	장현준	사복신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545번지 2호 9/2
경기87라 2484	2009-08 -02	이사감	전기영	사복신협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590번지 1 호 2/3
07노8540	2009-11 -07	수취인 불명	정인숙	대한영농자재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24번지 2호 3/
강원28마 3426	2009-08 -07	수취인 불명	정금옥	계양공구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4번지 35호 15/6

93거2401	2009-11-10	수취인 미거주	이영태	쌍광사앞 사거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상리 125번지 2
강원31나 1324	2009-11-03	이사감	손기정	사북읍사무소앞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465번지 1호 23/2
03부4413	2009-11-10	이사감	주식회사 에버테크	오뚝이옆 교차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6번지 9호 남동공단 135블럭 8롯데
32두7563	2009-08-15	수취인 불명	김홍정	사북신협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번지 33 호 7/1
02부8270	2009-10-22	수취인 불명	윤진수	사북읍사무소앞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433번지 1호
01소8412	2009-10-02	우편함 투여	임종혁	쌍광사앞 사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6번지 7호 43/3 예성유토피아 102동 702호
41서4367	2009-10-27	우편함 투여	(주)삼원중 합컨설팅	랜드앞 안전지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번지 2호 2층 203호
대전31도 9131	2009-10-22	수취인 불명	허동석	사북신교량 중앙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524번지 1호
51모3720	2009-10-09	우편함 투여	유현숙	정선야식앞 중앙선 횡단보도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번지 6 호 5/9 미소빌아파트 1002호
강원70머 2889	2009-07-03	우편함 투여	오경이	대산전당사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 21번지 1호 10/4 한보5단지a504-309
강원27나 5824	2009-07-04	장기간 방치	노영순	사북신협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43번지 4호 14/5
14우4086	2009-07-15	주소불명	대신자동 차매매할 부산업 주	사북신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번지 (상품용)
서울39거 9153	2009-07-15	우편함 투여	정규석	사북신협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31번지 성원 아파트 104-504
10너3312	2009-07-14	장기간 방치	김동현	사북우체국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0번지 13호 31/5 유진2차아트빌 103동 1406호
30마1413	2009-07-13	수취인 미거주	이덕수(상 품용)	사북신협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331번지
53러9000	2009-07-09	우편함 투여	(주)우석디 앤씨	사북우체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0번지 1호 양우로데오시티 1331
07소1472	2009-07-17	장기간 방치	박정인	사북신협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5번지 48 호 18/
51마4845	2009-07-30	주소불명	배승호	사북신교량위 중앙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18번지 12 호 18/1 우창빌라 101호
57구7060	2009-07-28	우편함 투여	이상민	사북신교량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번지 1호 7/3 한울아파트 105동 1402호
57구7060	2009-07-27	우편함 투여	이상민	사북신교량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5번지 1호 7/3 한울아파트 105동 1402호
대전31도 9131	2009-07-17	수취인 불명	허동석	사북신교량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524번지 1호
대전31모 4104	2009-07-15	우편함 투여	안동규	유명약국옆 교차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720번지 34/ 2

경기57너 8572	2009-08 -01	수취인 불명	이보숙	사북신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46번지 6 호 2/5 서울주택 B동 303호
경기30도 4607	2009-08 -05	장기간 방치	대일정보 시스템(주)	대왕장 인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18번지 2호
충남46가 2756	2009-08 -14	우편함 투여	임미순	오뚜기열 교차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281번지 동아(아) 102-203 T.33-7972
충남31머 2921	2009-08 -11	이사감	김재민	사북신교량위 교차로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213번지 4호 1/4
경기77가 7837	2009-08 -06	수취인 불명	조방신	아우디전당사 건너편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동 2287번지
62가1414	2009-08 -06	주소불명	한남길	사북신교량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41번지 1호 7/101호
07소1472	2009-07 -22	장기간 방치	박정인	사북신협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5번지 48 호 18/
충북31두 7490	2009-08 -03	이사감	권종원	사북신교량위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장리 136번지 1호 6/
74구1835	2009-07 -29	수취인 미거주	고명자	최약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488번지 13/
경기92로 6715	2009-07 -27	우편함 투여	조동수	사북신협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464번지 2/1
08어7690	2009-07 -26	우편함 투여	양봉철	사북읍사무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79번지 1호 3/4 지.에프아파트 104동 401호
경기34머 8178	2009-07 -26	우편함 투여	김형진	사북읍사무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번지 11호 5/1 주공아파트 408동 1006호

정선군공고 제2010-3호

정선군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건축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01. 06.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본 조례는 건축법(법률 제9774호 2009.06.09)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1629호 2009.07.16)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정비하며 현행조례 및 시행규칙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사항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주택부서(우편번호 233-701)
- FAX 제출 : 033-560-2596
- 문의전화 : 033-560-2472

붙임 : 1.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정선군 건축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농업용 창고, 영별표1의 제21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종교집회장으로서 방화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말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란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정선군규칙 제 호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건축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 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조제3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월15일,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공고 제2010-8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이은미 외 4건
- 주소또는거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9-9 동방빌라 B01호
-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부고지서
- 서류의 내용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2009년 12월 중 귀하의 주소지·거소지·사무소 등록지로 고지(일반우편·등기우편)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기한내 고지가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10년 1월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 7.

정 선 군 수

지방세 공시송달 내역

발송지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9-9 동방빌라 B01호 (4통 3반)	이은미	토지 정선읍 여탄리 산 27번 지 52959.0000㎡ 매매	이사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 294-3 사북선명2차아파 트 202동 102호 (9통7반)	임병호	토지+건물 사북읍 사북리 294-3번지 202동 102호 36.8000㎡ 건물 59.93㎡ 매매	수령인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펠리스 B동 2510호 (11통18반)	김세환	토지 신동읍 고성리 287번지 992.0000㎡ 매매	수령인 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016-9 (21통7반)	손권수	토지 북평면 남평리 164번지외 2필지 2985.6000㎡ 무상증여	수령인 없음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남수 동 11-217 남수빌라 302호 (14통7반)	이진선	토지 화양면 석곡리 1032번지 1729.0000㎡ 매매	수령인 없음

정선군공고 제2010-18호

2010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정선군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구 분	계	내국인	조례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비 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	33,980	33,960	16	4	

※ 내국인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외국인 :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정선군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2010. 1. 8.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1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동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10. 1. 8.
정 선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			선거권이 없는 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계	내국인	등록 외국인
정선군	34,135	34,128	7	168	168	0	33,967	33,960	7

※ 2009. 12. 31현재 기준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자치단체장(군수) : 5,095명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정선군수	33,967	5,095	
정 선 읍	9,283	340	
고 한 읍	4,554	340	
사 북 읍	4,734	340	
신 동 읍	3,440	340	
화 암 면	1,496	224	
남 면	2,739	340	
여 량 면	1,991	299	
북 평 면	2,344	340	
임 계 면	3,386	340	

※ 서명인수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 3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지방의회의원 : 가선거구 3,700명, 나선거구 3,093명

(단위 : 명)

읍 면 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권자 총수	비 고
가선거구	18,500	3,700	
정 선 읍	9,283	185	
화 암 면	1,496	185	
여 량 면	1,991	185	
북 평 면	2,344	185	
임 계 면	3,386	185	
나선거구	15,467	3,093	
고 한 읍	4,554	155	
사 북 읍	4,734	155	
신 동 읍	3,440	155	
남 면	2,739	155	

※ 서명인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2개 읍면이상에서 각각 읍면별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정선군공고 제2010-20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 8.
정 선 군 수

(단위 : 명)

읍 면 별	총 주민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
계	40,708	34,139	168	33,971

※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국민4명, 영주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88명 포함

※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수(1/35) : 971명

정선군공고 제2010-22호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붙임서류를 2009년 12월 10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변경된 납기인 2010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개인(법인)명	과세물건	공고사유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5 (1통5반)	윤근세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0 정선병원사택 8동 104호 (4통8반)	이관용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1 (1통9반)	이상호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7-20 금광아파트 204호 (8통9반)	강인순	03마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120 (1통8반)	주영도	03마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아파트 104동 212호 (4통4반)	김천경	05마8***	기타 고지서반송
충남 보령시 신흥동 2247 준설토투기장(신승토건)	김우영	05버8***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410 (15통)	이윤자	09모4***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110호 (5통9반)	최미숙	10마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2-2 정선북실아파트 103동 201호 (4통3반)	이상덕	10마1***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2-1 (1통1반)	이영희	10마1***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412호 (5통10반)	유영진	10마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 (9통1반)	권순희	10마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85 (7통2반)	안중열	13수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00-7 정선빌라가동 401호 (4통3반)	변용진	15머6***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972-2 2/3	이기우	20가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아파트 101동 410호 (5통5반)	김미령	20수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1-24 (1통7반)	변영규	31오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6-15 코코레지던스 301호	남창수	39도7***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8-1 201	(주)미림종합건설	45어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17-2 영인빌라 301호(임종환씨덕)	맹옥동	50가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2-1 (1통1반)	이영희	51누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7 (1통5반)	이종호	51모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64 (8통3반)	이춘영	51모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6-10 (2통9반)	전종섭	51모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4-4 (1통9반)	최국환	51모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8-25 (7통3반)	김순녀	60마1***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3	반석기업(주)	60부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27 (3통7반)	이규영	62머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5-12 (5통1반)	신재진	75서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16-10 (2통9반)	전종섭	76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412호 (5통10반)	유영진	76버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900-2 (6통4반)	최정옥	77더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8-1 아리랑아파트 1동 503호 (3통5반)	유종명	강원1누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46-3 (3통11반)	이근환	강원1누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1 (9통6반)	고세학	강원27너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3-8 (2통8반)	윤영수	강원27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745-1 북실리 현대 A101-1807	고태선	강원27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6-6 미소빌아파트 1714호 (5통11반)	이예솔	강원27노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58-3 (2통1반)	고윤길	강원27노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8-24 (9통3반)	정의영	강원27머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59-2 (2통3반)	권윤숙	강원28노1***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9-1 102동 502호 (4통6반)	이상열	강원28노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47-1 (3통11반)	이주한	강원28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22-2 (4통7반)	전경택	강원29다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5-1 현대상가 101호 (1통6반)	장미애	강원32다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8-1 아리랑아파트 3동 404호 (3통7반)	전정자	강원34나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79-1 101동 502호 (4통6반)	박재준	강원34나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101호 (1통3반)	유종환	강원70라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중수	01머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7-6 (13통7반)	안준집	02라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6-2 (13통3반)	김영순	06너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0 고한주공아파트 103동 302호 (8통7반)	임종완	07소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8 (12통5반)	이형하	07소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92 (14통1반)	이동찬	08저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중앙아파트사택 26동 1호	이재록	09소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23 (12통1반)	김형국	09조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2-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D동 503호 (16통4반)	심성우	10노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54 (17통7반)	신명철	14거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6 (19통1반)	김덕봉	23구9***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 중앙아파트 1동 406호 (6통8반)	이종주	27라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191 10/2	이우진	31더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5-5 1/1	김수엽	34고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8 (12통5반)	이형하	37러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16 (12통1반)	최경희	39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42 (12통1반)	권소현	39부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45-3 진영아파트 204호 (13통1반)	박진수	40나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드사원숙소 C동 318호 (16통3반)	김희정	40도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8 대림산업	김주환	41라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33 (9통6반)	최은혜	42서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662 청솔아파트 105동 1008호 (24통8반)	이덕심	47우3***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중수	47우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6-57 (18통1반)	정윤자	49나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6-1 (6통2반)	안영수	50우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1 (14통4반)	전성자	51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4-28 (12통5반)	최종수	51노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5-10 고한주공 아파트 104동 1004호 (8통9반)	최완기	51모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73-16 (5통2반)	박영덕	53주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52 (17통7반)	최재원	58라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 (5통2반)	홍만석	60마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 (주)강원랜 드사원속소 C동 401호 (16통3반)	한세은	67라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2-228 (10통3반)	박춘배	70저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7-6 (13통7반)	전동표	92주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7-6 (13통7반)	안준집	93버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6-28	효산의료기(주)	강원27노3***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봉아파 트 13동 104호 (4통1반)	신상훈	강원27노5***	기타 고지서반송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04-5 (25통)	이종근	강원27노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7 삼봉아파 트 13동 201호 (4통1반)	서병호	강원27노6***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0-7 (16통5반)	김미옥	강원27노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25 (13통5반)	정혜란	강원27노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60-1 (9통5반)	임미애	강원27노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7 (5통4반)	박용남	강원27노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1-45 (18통8반)	민기수	강원27노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3	태산건설	강원28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6 (1통1반)	박숙희	강원28마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44 (12통2반)	박일수	강원28마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68 (14통2반)	김계홍	강원30라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36-10 (11통4반)	유재영	강원70노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3 (11통8반)	박원찬	01버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8-5	코스피아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44 (1통4반)	이신옥	02다9***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74 (10통2반)	안숙진	04우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9-2 (1통9반)	김기철	05구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해브굿디앤씨	06너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7 (12통6반)	최상경	07소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6 (3통7반)	신은자	09노7***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주식회사씨에스상사	10마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4 (9통2반)	김태한	15수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 오피스텔 915호 (9통4반)	정선기	17우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12 (3통7반)	노정환	19고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77 (12통6반)	최상기	29우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55	우진건설	32두7***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76 (1통5반)	박창훈	34두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사북선명 오피스텔 918호 (9통4반)	김진강	43너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6 (3통3반)	김형욱	47라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 좌동원아파트 다동 103호 (11통4반)	김장수	51모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8-5	비앤씨	51모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8-5	코스피아	51모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나무와나무	51모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102 (4통2반)	이영희	52로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 105동 210호	박순옥	64조6***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4 3층 (3통5반)	김성윤	67라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47-3 동원탄 좌동원아파트 나동 306호 (11통6반)	박상철	70도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 (5통2반)	윤병아	77너7***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5 (12통5반)	박종녀	77모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6 (3통7반)	신은자	93어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1-4 동원탄 좌 복지아파트 1동 301호 (5통16반)	배민섭	강원1누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5 (10통5반)	민창선	강원27노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95	삼정종합건설	강원27노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25-1 (1통6반)	탁광훈	강원27다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 (5통9반)	이성모	강원27라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14 (9통4반)	김성선	강원27라5***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5-3 (1통1반)	탁영호	강원27마4***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2 (7통3반)	박미자	강원28노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8 (12통2반)	이덕희	강원28노4***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28 (3통6반)	한광수	강원2마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5-16 (1통1반)	안세근	강원30다6***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주식회사 다성건설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34-1 (5반)	최석호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영서이엔지	03마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1	영서이엔지	03마6***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울산 북구 호계동 920 효성아파트 102동 703호	유연옥	03부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513-1	정선군이연구소	05조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35-1 (3통1반)	김용관	07우5***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35-1 (3통1반)	김종규	27로5***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주식회사 다성건설	32소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395 (2통2반)	이맹열	40다8***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82-7 (1통1반)	손대원	50모7***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6-6 (7통1반)	윤요호	50서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1-5	삼삼화물	51모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05-3 (3통2반)	안재현	51모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2 (4통2반)	김선자	51모2***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2-10 (6통5반)	안기남	53러5***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279-2 (2통1반)	이성춘	53러7***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97-1 (7통3반)	정진만	56로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91-1 (3통5반)	박현우	56로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91-1 (3통5반)	박현우	61소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840 (2통4반)	권기현	77마4***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199-5 (5통2반)	양금선	강원27노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122-10 (6통5반)	안기남	강원27노7***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03-1 장미연립 나동 202호 (1통3반)	김한범	강원27노8***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234-8 (4반)	강대성	강원27노8***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8	항백종합레저타운	강원28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91-1 (3통5반)	손점순	강원28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670-5	주식회사 다성건설	강원28더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95-29 501호 (37통5반)	김영희	강원28머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276-2 (7통3반)	이상경	강원80러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421-5	주식회사 기대	43다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635-7 (4통8반)	함옥순	48로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7동 502호 (1통7반)	조혜경	51모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30-13 (3통3반)	정희동	56로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228 (4통1반)	이민경	61구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822	교보푸드(주)	93거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30 무릉주공아파트 107동 502호 (1통7반)	조혜경	강원27고5***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579-1 (1통8반)	사만용	강원27나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2차오피스텔 1007호	김태호	강원70노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41-6 (1통3반)	이유진	03마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357 (3반)	장석열	03마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428 (2통2반)	이광선	10마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26-1 (2통3반)	김한연	51모3***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63-5	루크헤번랜드(주)	강원27노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107	정선음료(주)	강원27노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750 (2통4반)	조정옥	02다9***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193 (2통2반)	김순희	03보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8 (3통3반)	최명중	09러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 (3통2반)	백금자	10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5-1 (3통1반)	박철용	12두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547-10 대흥식당	김기현	16러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55-6 8/3	신정희	25머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15-3 (6통3반)	최봉수	27나4***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867 1/2	윤종성	27라2***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290 (2반)	강금자	27머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7-3 6/2	이혜원	35부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739 (2통4반)	조영란	37어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65-1 (3통1반)	박철용	48가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190 (1통1반)	최종천	50모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41 (1통1반)	엄영순	74거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723-2	YUCHANGYUN(유장운)	93버5***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4-101 (1통1반)	유재식	강원27거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인천 계양구 작전동 두루미마을 동보아파트 5206동 508호 (이화숙 씨)	이왕경	강원27노6***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8-6 (2통2반)	김홍배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1-8 (1통4반)	박진영	07소1***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97 (1통6반)	채국화	22버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393-1 (2통3반)	전주훈	45누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83-1 (1통6반)	임상규	강원27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48-6 (2통2반)	김홍배	강원27노6***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33 (1통4반)	최성규	강원27노8***	기타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11-8 (1통4반)	윤성순	강원28노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17 (2통3반)	전미자	강원28노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1239-4 (2통1반)	김혜숙	강원28다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03	명훈건설	강원33가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411-8 (1통4반)	최근영	강원33다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41-13 (4통3반)	김남호	02다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269 (6반)	강신국	10마1***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78-7 (3통2반)	문상호	51모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384 (3반)	유재천	60두8***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746-5 (5통3반)	김중성	93가3***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 384 (3반)	유재천	강원33나7***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43 (2통4반)	고영년	강원70노2***	수취인미거주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17-1 광원아파트 101호 (1통3반)	유종환	51노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96-3 (3통5반)	전제혁	강원27너5***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30 (4통8반)	조병옥	39로8***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98번지 1호 201호	미림종합건설	50수1***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6 (3통3반)	김성민	03소9***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14-1	(주)대성건설	강원37나3***	수취인미거주 고지서반송

정선군공고 제2010-23호

「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 2~ 7. 15(기간중 4개월)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모집인원 : 118명

모집분야	인 원 (명)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도배,장판등)	시동읍 5 남 면 5 여량면 4 북평면 8 임계면 5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남 면 5
③ 취약계층지원사업(다문화가정 지원)	여량면 2
④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하수구,배수구 보수)	사북읍 8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지방하천살리기)	정선읍 10 고하읍 10 사북읍 5 시동읍 10 화암면 5 남 면 3 여량면 8 북평면 5 임계면 10
⑥ 공공시설물 개·보수(관광지 시설물정비)	화암면 5
⑦ 정선 산소(O2)길 만들기	여량면 5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참여중 중도포기자

-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포함)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인 직계가족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하는 사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 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같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 단, 65세(1945.1.14일 이전 출생자)이상 노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로 참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조의5 제1호(직무성격상 불가피 한 경우)
- * 임금중 30%(전자40%,종이6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 상품권 사용지역은 정선군 내
 - * 4대보험 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간식비·교통비 1일 3,000원지급
 - * 사업 기간중 농번기(5월~6월중 2주간)기간 사업중단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정선군 산업경제과 560-2150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부서

2010. 1. 11.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0-32호

예 방 접 종 공 고

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및 결핵예방법 제15조에 의거 2010년 시행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1. 14.

정 선 군 수

접종명	대 상	접종일시	장 소	수 수 료	비 고
비시지	생후4주이내	매주목요일	보건소	무료	오전접종 (10:00~12:00)
		매주수요일	고한사북,신동,임계지소		
소아마비	생후2,4,6개월 (3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오전접종 (09:00~12:00)
		매주수요일	신동 화악 남면,여량,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디피에이 피	생후2,4,6개월 (3회) 생후18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 동면 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엔에알 (홍역,볼거리, 풍진)	생후12~15개월 (1회) 만4~6세(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 동면 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수두	생후12~15개월 (1회)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
		매주수요일	신동 동면 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B형간염	0~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소인:1,750원 대인:3,110원	영유아 오전접종 (09:00~12:00)
일본뇌염	만1~12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 동면 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티디	만11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고한사북지소	무료	
		매주수요일	신동 동면 남면,북면, 임계지소		
		매주화요일	북평지소		
장티프스	만5~65세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식품접객업소종사 자 불화전급수지 역주민대상 접종
유행성 출혈열	중학생이상	매주월~금요일	보건소 보건지소	무료	농업·임업종사자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대상접종
독감	만3세이상주민	매년10~12월	보건소 보건지소	미정	매년수수료변경

※지참물 : 의료보험카드, 모자보건수첩

정선군공고 제2010-33호

공 고

2010년1월4일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자동차 운행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적기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7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유예된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코자 하오니 차량소유자는 수검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정기검사 등의 유예대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 14 ~ 2010. 1. 29(16일간)
2. 유예대상
 - 대상차량 : 03부3412외 30대(별첨 “내역” 참조)
 - 검사기간 : 2010. 01. 01 ~ 2010. 01. 15
(등록증상 유효기간만료일 : 2009. 12. 01~12. 15)
3. 유예기간 : 2010. 01. 29일까지
4. 내 용
 - 유예기간까지 정기검사수검
 - 유예된 기간에 검사완료하고 발생한 과태료는 감면처리
5. 문 의 처 :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교통행정팀(☎033-560-2367)

2010. 1. 14.

정 선 군 수

유예대상 차량

성명 / 상호	주민번호	차명	검사유효기간	검사유효기간(변경후)
유연옥	511113-2	매그너스 2.0D L6 CLASSIC	2005-12-16~2009-12-15	2005-12-16~2009-12-30
김상복	550701-1	카이런	2005-12-14~2009-12-13	2005-12-14~2009-12-30
조동순	750514-1	아토스	2007-12-16~2009-12-15	2007-12-16~2009-12-30
김경희	740122-2	그랜저	2007-12-15~2009-12-14	2007-12-15~2009-12-30
이종규	750905-1	마르샤2.0	2007-12-03~2009-12-02	2007-12-03~2009-12-30
노충섭외1인(노수진)	360813-1	로체	2005-12-14~2009-12-13	2005-12-14~2009-12-30
심상빈	661006-1	아반떼	2007-12-09~2009-12-08	2007-12-09~2009-12-30
최재원	480425-1	쏘나타III 2.0	2007-12-16~2009-12-15	2007-12-16~2009-12-30
유희숙	551105-2	싼타모	2007-12-04~2009-12-03	2007-12-04~2009-12-30
정연목	750208-1	카니발	2007-12-08~2009-12-07	2007-12-08~2009-12-30
손금생	410213-1	스타렉스(STAREX)	2008-12-03~2009-12-02	2008-12-03~2009-12-30
조성규	601201-1	카니발	2007-12-05~2009-12-04	2007-12-05~2009-12-30
기독교대한감리회 아 우라지교회	000225-8	프레지오	2009-06-14~2009-12-13	2009-06-14~2009-12-30
김진영	610316-1	마이티로우데크	2009-06-12~2009-12-11	2009-06-12~2009-12-30
이상호	671215-1	봉고III 냉동차	2008-12-11~2009-12-10	2008-12-11~2009-12-30
신동문	690202-1	봉고프런티어	2008-12-11~2009-12-10	2008-12-11~2009-12-30
전익성	701107-1	포터초장축	2008-12-09~2009-12-08	2008-12-09~2009-12-30
정부교외2(서광원, 서 대원)	660703-1	포터II 슈퍼캡냉 동탑차(PORTER II)	2008-12-11~2009-12-10	2008-12-11~2009-12-30
김영숙	700620-2	현대4.5톤초장축 카고트럭	2009-06-13~2009-12-12	2009-06-13~2009-12-30
최미자	680303-2	시보레	2009-06-14~2009-12-13	2009-06-14~2009-12-30
김정학	680516-1	포터II(PORTER II)	2008-12-10~2009-12-09	2008-12-10~2009-12-30
김재갑	481207-1	스포티지그랜드	2007-12-16~2009-12-15	2007-12-16~2009-12-30
편상인	690120-1	아토스	2007-12-14~2009-12-13	2007-12-14~2009-12-30
김은섭	610924-1	코란도II-5	2007-12-10~2009-12-09	2007-12-10~2009-12-30
박광진	760201-1	프라이드	2007-12-02~2009-12-01	2007-12-02~2009-12-30
공석률	571110-1	갤로퍼승합	2007-12-12~2009-12-11	2007-12-12~2009-12-30
위정환	680825-1	그레이스15인	2009-06-06~2009-12-05	2009-06-06~2009-12-30
이병남	720725-1	포터초장축슈퍼캡	2008-12-05~2009-12-04	2008-12-05~2009-12-30
김홍석	720229-1	코란도-밴	2008-12-04~2009-12-03	2008-12-04~2009-12-30
권홍섭	740515-1	현대5톤트럭-장축	2009-06-05~2009-12-04	2009-06-05~2009-12-30
고재규	560127-1	포터슈퍼캡	2008-12-11~2009-12-10	2008-12-11~2009-12-30

정선군공고 제2010-34호

765kV 신태백-신가평송전선로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산업자원부 관보고시 제2007-34호(2007. 3. 13) 및 지식경제부 관보고시 제 008-212(2008. 12. 24)로 승인된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 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건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0. 1. 15.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처)
3. 토지수용내역 및 열람대상자

(단위 : m², 원)

수 용 토 지 내 역						토지소유자		비 고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보상금액	성 명	주 소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445-2	임	20,231	4,008	5,210,400	김서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25-19	강남캐피탈 광일상사 정선군청 동수원사무서 안성시청 영월군청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산356-1	임	11,504	4,659	2,795,400	권병주	경기도 용인시 용인읍 역북리 481-15	윤영옥 권선녀 권옥녀 권복여 권경녀 권미녀 권명녀
“	산356-1	임	11,504	4,659	2,795,400	권준희	-	
“	산363	임	5,088	872	174,400	강두환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1가 18	
“	산363	임	5,088	872	174,400	고광배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	
“	산363	임	5,088	872	174,400	김건흠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59-7	
“	산363	임	5,088	872	174,400	박귀복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317-9	
“	산363	임	5,088	872	174,400	정연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4	
“	산363	임	5,088	872	174,400	지영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100	

수 용 토 지 내 역						토지소유자		비 고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면적	보상금액	성 명	주 소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570	임	1,603	1,098	1,811,700	권성철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48	임	11,901	1,184	2,249,600	전석주	-	
“	437	전	1,074	415	1,888,250	김병두	-	
	456-2	전	2,826	1,719	7,133,850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422	임	1,091	330	561,000	박영중	-	
	산421	임	6,050	2,496	4,243,200			
“	산383	임	10,314	50	85,000	신옥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2-19	정선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수남

4. 공고기간 : 2010. 1. 15 ~ 2010. 1. 29 (15일간)

5. 열람장소 : 정선군청 녹색정책과

6. 의견제출 : 2010. 1. 29일까지 정선군 산업경제과로 토지수용에 관한 의견 제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1-10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용지팀 장진원(02-2096-4337)